

의안번호	2209907
의 퇴 인	김교홍 의원
회 답 일	2025. 5. 27.
추계번호	24A314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7조(보급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음(제1항) 1.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2.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2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사업 3.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4. 실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27조(보급사업)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제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¹⁾에 따른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개정안에 따라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기존 사업의 재정지출이 증가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되어 국가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의 내역으로 “건물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소유한 건물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설치비의 일부를 무상보조하고 있음

* [참고자료1]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 사업 개요 및 운영 현황

- 또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를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자에게 장기·저리의 사업비를 융자 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업에서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함

* [참고자료2]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개요 및 운영 현황

- 개정안에 따라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기존에 실시 중인 건물지원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거나,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가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계 대상은 기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 지원을 확대하거나 신규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나, 추계에 필요한 지원 기준 및 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재정소요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려면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추가설치 수요(설치 희망 설비의 종류, 용량 및 연도별 지원 신청률 등)를 구체적으로 가정할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기존 지원 사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시행되었을 때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추가 설치 수요가 얼마나 발생할지 알 수 없으며, 재량지출성 사업의 특성상 설치하려는 설비의 종류 및 용량 등도 재원 추가 투입 규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여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 중 건물지원 내역사업을 통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76건에 대하여 총 350억원의 자가소비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였음
- 이에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서영빈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서영빈	02-6788-4653	ybin@aseembly.go.kr

[참고자료1]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 사업 개요 및 운영 현황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일반 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건물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²⁾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³⁾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시설물
 - (시범적사업) 모든 주택, 건물 및 부속 시설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 (추진목적)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 및 확대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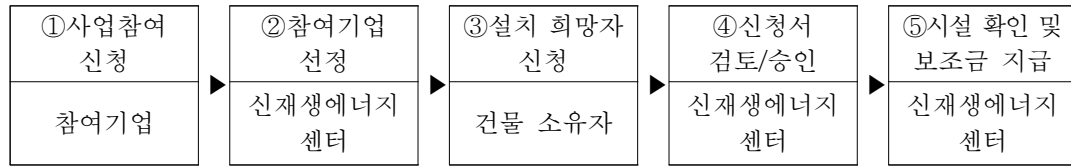
○ (지원기준)

구 분		지원 범위 (단위 사업당)	지원예산액 (백만원)	보조금 지원단가 (천원, AT제외)	비 고
건물 지원 사업	태양광 (고정식)	일반	9,098	576/kW	-
		축사 및 축산시설		628/kW	
		제조업 산업기업		576/kW	
		건물 일체형 (BIPV)	-	별도 검토	최대 70% 우대지원 (지붕형 50%, 벽체형 70%)
	태양열 (평판형·진공관형· 자연순환식)	1,500㎡ 이하	4,925	664/㎡	총사업비 공급가액의 3% 이내 최대 25,000천원 한도
				597/㎡	
				531/㎡	
				3,145/대	
				876/㎡	
	지열(수직밀폐형)	1,000kW 이하	1,793	691/kW	태양광(추적식), 집광태광, 풍력, 수열 등
	연료전지	-	1,727	7,027/kW	
	기타	-	818	별도 검토	
	소 계	-	25,469	-	-
	시범적 사업	-	6,624	별도 검토	-
총 계			32,093	-	-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 (진행절차)



□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현황

- (평가기준)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신청사업 계량평가 시 가산점 3점 부여(가점항목 7점 만점)하고, 지원 범위를 기존 100kW에서 최대 200kW까지 확대('25년 기준)
- (지원현황) 2023년부터 2025년 5월말까지 산업단지 지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지원 건수	138건	80건	158건	376건
지원 금액	106억원	64억원	180억원	350억원

* 사업 신청 기준으로, 실제 지원 건수는 변동될 수 있음

제21조(주택지원사업 등) 주택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하며, 그 범위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2. 공동주택

3)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6조(지역지원사업 등) 지역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하며, 그 범위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시설물
2. 사회복지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로부터 신청권을 위탁받아 신청하는 경우(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소유자는 자부담과 사후관리 등을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참고자료2]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개요 및 운영 현황

사업 개요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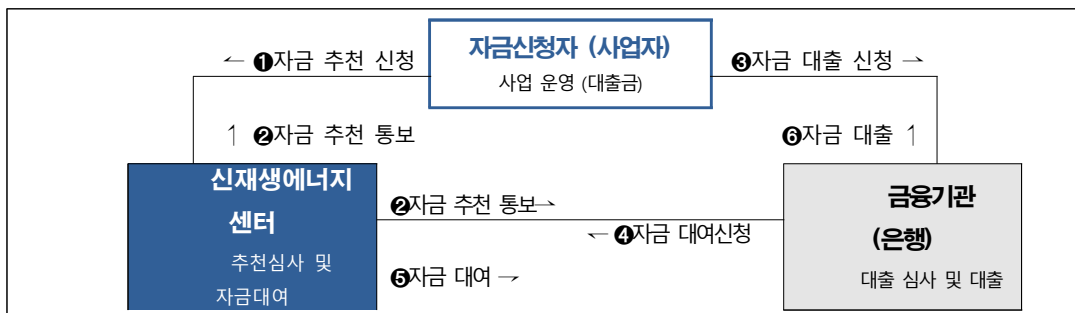
- (생산 및 시설자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를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자에게 장기·저리의 사업비를 융자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 마련
- (운전자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융자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 안정성 확보

○ (추진목적)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시설에 대하여 장기·저리 융자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지원기준) 24년도 사업 기준

내역사업명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 비율(%)
생산및시설자금	융자	중소·중견기업 등	361,280	중소80% 이내 중견60% 이내
운전자금	융자	중소기업	2,000	중소80% 이내

○ (진행절차)



□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 지원 현황

○ (우대지원)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우선지원* 및 지원비율 상향** 등 인센티브 부여('25~)

* 일반 접수일정 대비 일주일 조기 접수, ** 일반 지원비율에 5%p 상향하여 지원

○ (24년 지원현황)

구분	전체
지원 건수	1,307
지원 금액	1,984억원